

RESEARCH ARTICLE

Examination Practices in Design Patent and Participatory Examination

Jongkyun Kim

Deputy Directo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ongkyun Kim (heideger@hanmail.net)

ABSTRACT

The examination of design application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regulations; however, the criteria for assessing design applications remain ambiguous, because the relevant provisions are primarily presented as illustrative examples. Consequently, design examinations have largely been conducted according to longstanding practices, granting examiners a broad scope of discretion. In particular, the sections entitled Description of the Design and Essential Features of the Creation lack clear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mandatory content; thus, their preparation and evaluation have become largely formulaic, maintained in practice as a nominal formality. Similarly, despite abolishing the orthographic projection system more than fifteen years ago, the majority of applications continue to be submitted with orthographic drawing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actice, and examiners conduct examinations on that basis. In addition to the relatively lenient treatment of omitted drawings, the conventional framework remains intact. Moreo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renderings, photographs, and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s are also unclear and are in practice determined by conventions.

While such practices, accumulated through long-standing interactions between applicants and examiners, have enhanced the predictability of examination outcomes, reliance on unwritten conventions has also given rise to inconsistencies in examinations and created barriers to entry for ordinary applicants. In respons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examination process, which has historically been conducted in a closed manner, and to improve established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Recent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KIPO, such as the Pre-Review system and Open Examination,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reforming examination practices. Furthermore, reasonable and well-established practices maintained over time should be coded as explicit regulations.

Open Access

Received: September 01, 2025

Revised: September 22, 2025

Accepted: December 03, 2025

Published: December 30, 2025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5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KEYWORDS

Design examination practices, Filing practices, Curse of expertise, Orthographic projection system, Participatory Examination.

원저

디자인심사관행과 열린디자인심사*

김종균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

교신저자: 김종균 (heideger@hanmail.net)

차례

1. 들어가며
2. 디자인규정과 심사관행
3. [디자인 도면]의 해석
 - 3.1. 물품류와 물품의 명칭
 - 3.2. 디자인의 설명
 - 3.3.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3.4. 도면의 판단
 - 3.4.1.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면 요건
 - 3.4.2. 정투상도면과 자율도면
 - 3.4.3. 사진도면과 렌더링도면
 - 3.4.4. 도면의 동일성 판단
 - 3.4.5. 참고도면의 구분
4. '전문가의 저주'와 열린 디자인심사
 - 4.1. 전문가의 저주
 - 4.2. 열린 디자인심사
 - 4.2.1. 디자인출원 형식의 개선
 - 4.2.2. 디자인심사의 실체적 판단
5. 마치며

국문초록

특허청의 디자인심사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나, 디자인 출원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대부분 예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동안 대부분의 심사는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디자인 심사관의 재량권이 매우 넓은 편이다.

디자인 출원서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은 그 규정하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없어, 통상 그 내용이 관행에 따라 기재되고, 판단되어 사실상 형해화된 형태로 유지되었다. [디자인 도면] 역시 정투상도법이 폐지된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출원이 관행에 따라 정투상도면으로 제출되고, 디자인 심사관도 이에 맞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도면 판단이 덜 엄격해지고, 도면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과거의 틀을 관행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렌더링이나 사진, 3D도면 등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도 불명확하여 대개 출원과 심사의 관행에 따른다.

심사관행은 오랜 기간 출원인과 심사관간의 교신을 통해 정해진 약속으로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지만, 명문화되지 못한 관행이 누적되는 가운데, 심사판단의 불일치가 생겨나기도 하고, 일반 출원인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랜기간 폐쇄적인 환경에서 진행된 디자인 심사를 일정부분 공개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청이 진행하는 '사전리뷰' 제도나 '열린심사'가 심사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합리적인 심사관행은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디자인심사관행, 출원관행, 전문가의 저주, 정투상도법, 열린디자인심사

1. 들어가며

디자인의 출원과 심사는 법과 시행규칙과 시행령, 사무취급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진행되며, 여기에 정하지 못하는 내용은 ‘디자인 심사기준’을 따르며,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통 심사일관성을 이유로 ‘선심’의 판단과 ‘심사관행’을 따르게 된다. 심판결례를 중시하는 상표심사와는 달리, 디자인심사는 각 물품의 특성이 다른 탓에 개별 심판결례의 판단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거의 귀속되지 않는 편이다.

디자인등록출원서는 크게 [서지사항]과 [디자인 도면]으로 구분되고, [서지사항]의 기재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설령 잘 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을 통하여 손쉽게 치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디자인 도면]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보정도 쉽지 않다. 현재 우리 디자인제도는 다양한 형식의 도면 제출을 인정하고 있으나, 각 도면의 작성방법¹⁾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제각기 특성이 다른 형태의 도면에 관한 적합성 판단은 개별 심사관의 몫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 특허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 국가 특허청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2010년대부터 ID5²⁾를 통하여 꾸준히 각국의 심사경향을 비교하며 일치시키려는 노력³⁾을 해오고, WIPO에서도 도면 표준화 작업(DLT)⁴⁾을 진행⁵⁾하고 있으나, 물품별 특성이 다른 디자인의 도면 작성과 해석방법을 통일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출원(대리)인과 심사관은 과거의 일본 법체계와 기준을 차용해 왔던 정투상도법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출원인은 정투상도면을 제출하고 있고, 심사관도

* 본 연구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심사관행’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심사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 1)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 종략…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023.12.21.)]).
- 2) ID5: Industrial Design 5 Forum의 약자. ID5는 디자인선진국 5개 특허청 협의체(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IPO)로 오랜기간 도면 출원도면 요건 비교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한-일-중국 헤이그디자인 심사관 간에 디자인 심사비교도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ndustrial Design 5 Forum, “ID5”, ID5, <<https://id-five.org/>>, 검색일: 2025. 9. 26.
- 3) EUIPO, “Catalogue of the view and drawing requirements for designs”, ID5, 2018. 5. 16., <<https://id-five.org/catalogue-of-the-view-and-drawing-requirements-for-designs-2018/>>, 검색일: 2025. 9. 26; EUIPO/C NIPA, “Informative User Guide for the View and Drawing Requirements of Designs”, ID5, 2021. 11. 18, <<https://id-five.org/user-guide-for-the-view-and-drawing-requirements-of-designs/>>, 검색일: 2025. 9. 26.
- 4) DLT(Design Law Treaty), 2009년부터 WIPO에서 전 세계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시키는 국제규범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2024년 11월 체결된 디자인법 조약이나, 국내 상황 및 도면형식 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아 가입이 유보된 상태이다.
- 5) WIP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Guidance on Including Multiple Design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Guide to the Hague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Looking Good -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Desig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 “The Reproductions of the Designs” 등 도면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WIPO, “Guidance on Including Multiple Design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WIPO,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_system_guide_multiple_designs.pdf>, 검색일: 2025. 9. 26; WIPO, “Guide to the Hague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ttps://www.wipo.int/.../docs-en-hague-system-guide.pdf>>, 검색일: 2025. 9. 26; WIPO, “Looking Good -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Desig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for Business Series Number 2, 2019. <<https://www.wipo.int/edocs/pbdocs/en/wipo-pub-498-1-en-looking-good-an-introduction-to-industrial-designs-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pdf>>, 검색일: 2025. 9. 26; WIPO, “The Reproductions of the Designs”, WIPO,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guide/reproduction>>, 검색일: 2025. 9. 26.
- 6) 정투상도법(Orthographic Projection): 물체의 각 면을 투상면에 평행하게 투영하여 여러 개의 투상면(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 기계제도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심사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이나, 렌더링도면 역시도 정투상도법에 따라 판단되고, 3D 도면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심사관행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디자인 출원과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심사관행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기능과 역할, 보완 할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디자인규정과 심사관행

디자인출원서의 작성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법과 시행규칙은 매해 2회 전후로 개정되었지만, 출원서 작성방법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의 [별표]나 [서식]의 내용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과거 오랜기간 디자인도면의 작성방법을 규정하던 ‘정투상도법’이 폐지된 2010년 이후, 거의 모든 표현방식의 디자인 도면이 출원가능⁷⁾한 상황이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별표]나 [별지 제4호 서식]⁸⁾는 참고사항에 가까워졌다.⁹⁾ 시행규칙이 정하지 못하는 도면의 작성과 해석에 관해서 디자인 심사기준과 특허청 내부의 심사지침으로 심사의 일관성을 꾀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도면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디자인 심사기준에는 디자인 출원서의 도면을 판단하는 기준을 담는 데에는 소극적인 반면, 법해석에 집중하는 편이다.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디자인 도면]은 제도상 규정이 부족하여 대리인의 출원관행과 심사관의 심사관행으로 출원되고 판단된다. 가령, 가장 기본적인 도면 표현방법인 파선의 사용례 조차도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정투상도법이 폐지된 이후, 새롭게 도면작성방법을 제시받지 못한 대리인들은 등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정투상도면에 준하는 출원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심사관 역시 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심사관행이다. 한편, 국내에서 인정되는 3D도면의 경우, 그 출원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원과 호환되지 않는 불편함으로 인해 다출원기업은 선호하지 않고 있다.¹¹⁾ 출원과 심사의 관행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심사의 기준이 없는 내용을 고심해 온 출원대리인과 심사관의 약속이며, 오랜 실무와 심사평가와 심사관의 토론과정에서 살아남은 설득력있는 해석 방법들이 세대간에 계속적으로 전수되어 구축된 판단의 틀이다. 따라서 관행이라고 하여 불합리한 관습으로 펼쾡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정교하게 다듬고 제도화시켜내야 할 특허청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7) 현재 디자인출원시 제출가능한 도면의 포맷은 TIFF, JPEG 형식의 이미지, 3차원 모델링 파일(IGES, OBJ, STEP, STL), 동영상 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이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023.12.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9. 26.).

8)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도면 작성방법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정이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9. 26.).

9) 진선태, “디자인 도면형식요건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2022), 66-70면.

10) 안원모, “등록디자인 도면에서의 파선의 해석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2017), 39-76면.

11) 해외 3D 도면 출원이 가능한 나라는 EU와 러시아가 있으나, 파일 포맷을 공유하지 않아 호환이 어렵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3D Modeling Data Standard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어 다른 국가와의 포맷 호환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상태이다.

3. [디자인 도면]의 해석

3.1. 물품류와 물품의 명칭

디자인 출원서는 크게 [서지사항]과 [디자인도면]으로 구분되고, 이 중 [디자인도면]에는 [물 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을 기재해야 한다. 통상 디자인의 권리는 ‘대상물품과 디자인’으로 구성되고, 등록권리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¹²⁾를 갖게 되므로, 디자인 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품류]와 [도면]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 [물품류]에 대한 관심이 낮고, 물품분류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정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설령 출원인이 지정한 물품분류와 특허청이 판단한 분류가 상이하더라도 별다른 다툼이 없이 특허청의 판단을 따르는 편이다. 이는 우리 심판결례에서 서지사항에 기재된 물품의 분류코드보다는 실 사용실태를 따져서 대상물품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물품의 분류로 인한 다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물품의 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통명칭(일반명사)로 기재되므로 디자인의 권리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이슈도 없다.

3.2.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도면]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설명]란은 기본적으로 도면에 표현되지 못한 물품의 특징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란¹³⁾으로, 여기에 기재할 사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디자인 설명란의 기재사항’에서 정하고 있다. 보통 ‘물품의 재질과 사용방법, 도면의 설명’ 등을 기재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위 [별표 2]의 1과 2¹⁴⁾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별지의 각 내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심사관행상 이를 주로 인용하고 있고, 출원대리인은 관행적으로 ‘재질, 기능/용도, 각 도면의 설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⁵⁾ 하지만 물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은 물품의 명칭에 “○○용”으로 기재한 경우, 이미 용도가 한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재가 불필요하다. 용도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이 ‘가위, 의자’ 등과 같이 경험칙상 기능이나 용도, 사용방법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 물품의 용도는 디자인의 분류를 정하기 위한 참고내용으로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고, 이미 출원

12) 디자인보호법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원 2022. 1. 20. 선고 2021허2687 판결,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참고).

13) “‘디자인의 설명’은 출원서 및 도면과 더불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특허법원 2020. 11. 13. 선고 2020허4662 판결 참고).

14)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관련 법령집」, 특허청, 2025, 138-140면.

15) 전자출원서 양식에 [디자인의 설명]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 출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엇이라도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은 출원시에 물품의 분류를 기재하였으므로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미국 우선권이 있는 디자인출원의 경우,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서에는 재질과 용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¹⁶⁾,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출원할 경우 국내 디자인출원형식과 합치되지 않지만, 심사관행상 재질의 미기재를 허용해 왔고, 최근 우선권이 없더라도 재질의 미기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도면은 통상적으로 과거의 정투상도법에 준하여 사시도를 [도면 1]로 하여, 이후 정·배·좌·우·평·저면도 순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제출된 도면만으로 형상과 모양이 명확히 특정되므로 각 ‘도면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타, 부분디자인이나 투명부, 도면의 생략에 관한 설명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나, 제출된 도면의 표현만으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내용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¹⁷⁾ 한편, [디자인의 설명]란에 물품에 대한 설명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작용, 효과 등을 기재¹⁸⁾할 경우, 오히려 거절이유를 만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에 [디자인의 설명]란의 간소화를 명시할 예정이나, 무엇을 어느 정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여 각 심사관의 판단 재량으로 남겨져 있다.

3.3.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¹⁹⁾에서 정하고 있다. 이 란의 기본 취지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 즉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임과 제33조 제2항, 용이창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내용을 300자 이내로 기재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출원인/대리인 및 심사관은 공히 “○○○”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과 같은 정형화된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왔다.²⁰⁾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개인 출원인들은 디자인의 창작 아이디어나 컨셉, 기능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거절이유로 지적하는 심사결과도 있고,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구성하지 않는 본 란의 기재 내용을 거절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출된 디자인과 기재내용에 큰 차이만 없다면 별로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규정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되려 빈번한 거절이유만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2025년 12월부터 삭제될 예정이다. 심사관행이 제도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3.4. 도면의 판단

3.4.1.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면 요건

디자인출원과 심사의 핵심은 ‘도면’이다. 지난 2010년 정투상도법이 폐지되고 자율도면이 도입되면서 정투상도법에서 정하는 도면작성의무(사시도 및 육면도)를 폐지하고, ① 도면 작성 방법의 자유화, ② 도면 제출 개수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디자인의 전체 형태와 창작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도면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하면,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16) 주상돈, 「‘부분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달라진다… ‘심사기준’ 개정」, 아이피데일리, 2025. 6. 14자.

17) 진선태,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2015), 9-14면.

18) 도면과 참고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물품과 무관한 컨셉,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기재할 경우, 거절이유로 지적되는 경향이 있다.

19)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관련 법령집」, 특허청, 2025, 141-144면.

20) 특허청,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특허청, 2025,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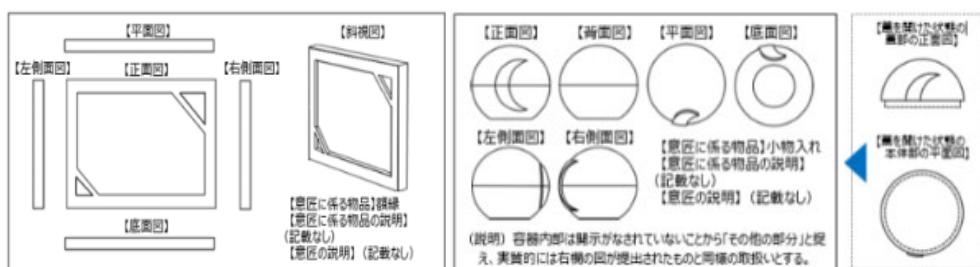
출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취지²¹⁾였다. 자율도면형식의 선(線)도면 뿐만 아니라, 사진, 렌더링, 3D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도면 표현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사시도면이 필수 제출도면도 아니게 되었고, 디자인도면의 작성방법에 아무런 제약도 남아있지 않다.

현재 디자인도면 작성방법을 정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023. 12. 21.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도면은 “흰색의 바탕”에 ‘검은색 잉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며,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시’를 통하여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²²⁾이라고 적고 있어, 암묵적으로 정투상도법의 선(線)도면을 권장하는 듯한 태도²³⁾를 취하고 있다.

3.4.2. 정투상도면과 자율도면

자율도면으로 전환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 각 육면도 중에서 누락된 도면이 있는 경우, 생략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정도의 융통성이 생겼고(2015), 각 도면의 축척이나 도시 방향에 대한 관용이 생겼으나, 도면의 작성방법은 여전히 자유로운 도면 작성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선도면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렌더링도면까지 정투상도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도면을 제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디자인심사 역시 많은 부분에서 정투상도법에 준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정투상도면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것은 오직 2009년에 도입된 3D도면뿐이다.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정투상도법에 따라 작성한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를 디자인출원서의 기본도면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현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묵(濃墨), 흑색잉크 또는 변색되지 않는 필기구로 선의 폭은, 실선 및 점선이 약 0.4mm(단면도를 표시한 평행사선은 약 0.2mm), 쇄선은 약 0.2mm로 하고, 도면의 크기는 폭 150mm, 길이 113mm를 초과하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면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²⁴⁾하고 있어 도면 작성과 심사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림1 일본 특허청『의장심사기준』에 제시된 도면 작성 예시>

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자인 도면 간소화 방안 연구”, 특허청, 2006, 1-118면.

22)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관련 법령집」, 특허청, 2025, 196-20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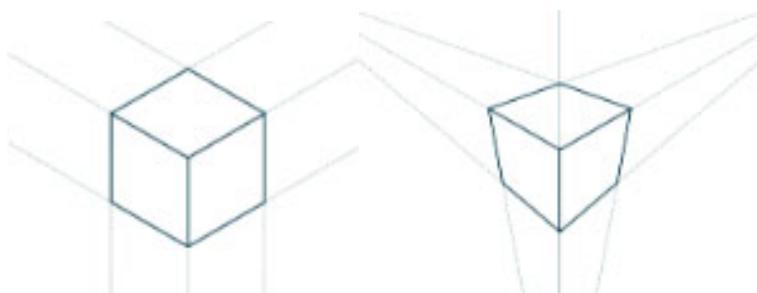
23) 단지 예시일 뿐이라 하더라도 도면작성과 관련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면 작성의 기준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

24) 特許庁, 「意匠審査基準」, 特許庁, 2023, 56면, 4. 圖面, 4.1 様式及び図面の作成方法. “線の太さ: 線の太さは、実線及び破線にあっては約0.4 mm、切断面を表す平行斜線にあっては約0.2 mmとしてください。また、鎖線にあっては約0.2 mmとしてください。図の大きさ: 図は、横150 mm、縦113 mm を超えて作成（記載）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意匠法施行規則 様式第6(第3条関係). (特許庁, “特許庁”, 特許庁, <<https://www.jpo.go.jp>>, 검색일: 2025. 9. 26; e-GOV 法令検索, “e-GOV 法令検索”, e-GOV, <<https://laws.e-gov.go.jp>>, 검색일: 2025. 9. 26.)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도면작성 기준을 모두 삭제²⁵⁾하였으므로 도면의 명칭부터 축척, 방향, 선의 두께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 가령, 기존의 ‘사시도’라는 명칭은 ‘전체적인 모습’, ‘정면-좌측면-평면에서 바라본 모습’, ‘사시방향의 도면’ 등과 같이 기재되어 혼란스럽지만, 이를 거절이유로 지적할 수 없다. 또 사시도가 더 이상 필수도면이 아닌 상태에서, 6면도만 제출된 디자인을 거절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시도가 생략된 6면도는 도면의 각 방향의 형상과 모양이 모두 드러난다는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물품의 입체적인 형상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심사관이 적극적으로 사시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지만,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므로 애초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꺼리게 된다. 과거의 것은 지웠지만, 새로운 것은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간 어디쯤의 과도기적 출원방식과 심사관행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정투상도법의 선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직된 출원/심사관행은 표현 방법의 제약이 적은 사진과 렌더링 도면의 작성과 심사에 걸림돌이 된다. 가령 정투상도법은 기계 제도에서 주로 이용되는 관념적인 작도방법으로 물품의 각 방향에서 평행하게 관찰한 모습을 표현하므로, 도면 내에 투시가 전혀 생기지 않아 도면의 작성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사진에 대입하게 되면 특별한 카메라 장비가 없는 개인출원인이 투시를 제거한 도면 대용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²⁶⁾ 도면 대용 사진을 촬영하는 전문 스튜디오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보정하여야만 정투상도법에 준하는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디자인심사관은 사진 대용 도면에 표현된 투시의 인정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며, 결국 대리인이 있는 출원과 개인출원인을 구분하고, 투시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투시는 인정하는 등의 융통성있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정투상도법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심사관행이다.

하지만, 사진에 준하여 판단되는 렌더링 도면의 경우, 사진과는 달리 투시가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대개는 엄격하게 투시를 제약하는 심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렌더링 도면에 투시는 출원인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심사관행상 사진도면을 제외하고는 투시가 거의 용납되지 않는 편이지만, 현재 우리 법과 심사기준에서 도면을 투시도법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림2 정투상도법과 투시도법 표현의 차이>

25) 2009년까지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에는 입체적인 물품의 도면으로 사시도가 없는 경우, 도면이 정투상도법이 아닌 경우, 6면도에 준하는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거절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 모두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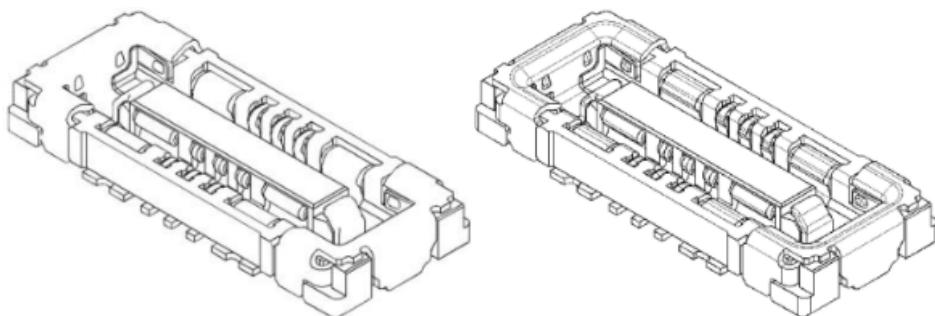
26) 투시 없는 사진을 촬영하려면, 카메라와 피사체를 수평으로 맞추고, 피사체와의 거리를 멀리하여야 하며, 줌렌즈로 피사체를 확대하거나, 고해상도로 촬영후 트림(Trim, 절단)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면 피사체의 형상이 왜곡되고 과장된 투시가 발생하기 쉽다.

3.4.3. 사진도면과 렌더링도면

정투상도법의 도면은 관념적인 선도면이므로 명암이 없으나, 사진과 렌더링도면에는 물품의 명암과 바닥면의 그림자가 표현되고, 이 경우, 물품의 명암을 회색으로 볼 것인지, 색상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심사관행상 유채색이 조금이라도 착색된 도면은 회색을 색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무채색인 도면은 명암으로 판단한다. 한편 사진도면에서는 물품의 바닥과 배경에 그림자가 표현되는데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림자는 인정되는 편이지만, 렌더링도면에 대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물품의 명암과 그림자에 대한 판단은 관행상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용인되며,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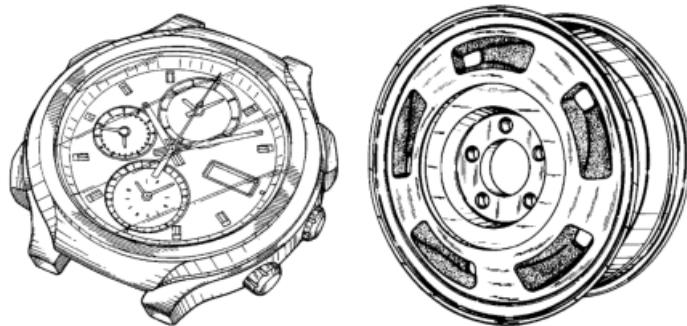
최근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선도면이 3D파일에서 추출되고, 이 과정에 3D 프로그램은 물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형성한다. 와이어프레임은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가상의 실선으로 실제 물품의 외형에 드러난 모양선이 아닌 은선(hidden line)인 경우가 많다. 과거 정투상도법에서 음영선(세선)의 표현을 거의 허용하지 않은 탓에, 세선 대신 와이어프레임을 많이 남겨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디자이너는 이를 ‘보이지 않는 선’으로 판단하지만, 심사관은 심사실무상 와이어프레임을 ‘모양선’으로 판단하고, 각 도면의 모양선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심사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일부심사관은 와이어프레임의 미세한 차이에 대하여 융통성있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모양선과 와이어프레임은 잘 구분되지 않고, 모양선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심사결과는 모양선을 일치시키라는 엄격한 판단이 대부분이다. 한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와이어프레임(모양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의 디자인출원을 우선권으로 하여 국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내 도면 표현의 추세를 쫓아 모양선을 일부 제거하는 대신, 일본 도면을 참고도면으로 첨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삭제된 모양선은 와이어프레임이 명확하며, 국내출원과 일본출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모양선 불일치’라는 심사관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참고도면으로 제출한다(그림 3 참고). 한편 미국의 디자인특허는 세선과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면과 굴곡, 질감을 표현하므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도면 내에 굴곡을 표현한 와이어프레임의 해석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림3 디자인등록 제1247927호의 [도면1.1] 과 [참고도면 1.1]>²⁷⁾

27)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 <<http://www.kipris.or.kr/>>, 검색일: 2025. 9. 26; J-PlatPat, “J-PlatPat”, J-PlatPat, <<https://www.j-platpat.inpit.go.jp/>>, 검색일: 2025. 9. 26.

<그림4 미국 특허청이 제시하는 디자인특허의 도면작성 예시>²⁸⁾

3.4.4. 도면의 동일성 판단

한편, 선도면과 렌더링, 사진, 3D도면의 동일성 판단도 규정과 관행이 불합치한다. 종래 도면의 종류가 다른 경우, 설령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동일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판단해 왔으나, 최근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선도면을 타 도면형식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허용²⁹⁾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동일성 판단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통상 선도면을 렌더링 내지 사진으로 표현하면 ‘사용상태도’로 보아서 참고도면로 인정해 왔고, 동일 디자인을 선도면과 렌더링도면으로 각각 출원하는 경우, ‘기본-관련디자인의 지정’을 고려하더라도 ‘1디자인 1출원 위배’로 보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는 종래 심사기준의 태도이기도 한데, 아래 그림 4의 디자인 심사기준과 같이 선도와 렌더링 도면은 각 동일이 아닌 유사로 판단해 왔다. 디자인의 동일과 유사는 직접적으로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심사관행이나 재량권의 범위로 남겨두어서는 곤란한 부분이다.

4.2 하나의 디자인을 각각 사진(컴퓨터 렌더링 포함), 선도(線圖), 셰이딩(shading, 무채색 음영구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에서 상호간 유사로 판단한다(다음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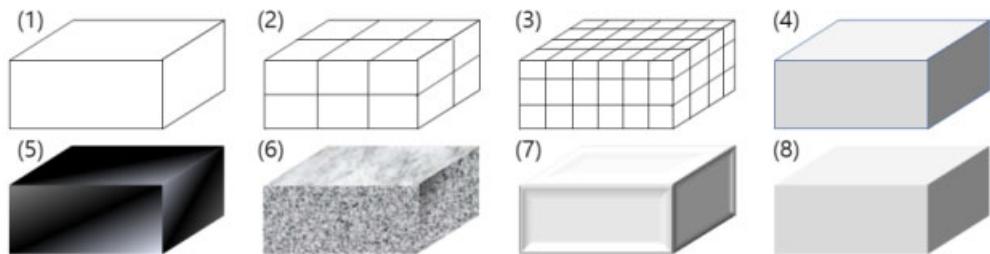


<그림5 『디자인 심사기준』의 유사판단 (p. 142)>

28)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Design patent application guide”, USPTO, <<https://www.uspto.gov/patents/basic/apply/design-patent>>, 검색일: 2025. 9. 26.

29) “3.1.2 도면(사진, 견본 포함)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선도면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사진 또는 견본으로 보정하거나, 반대로 사진 또는 견본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 도면 또는 사진 등을 그대로 실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정하는 경우.”(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심사기준」, 특허청, 2025, 207면).

하나의 물품은 다양한 방식의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을 모두 디자인출원이 가능한 도면형식으로 인정한 자율도면의 기본 취지를 되짚어 보자면, 비록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도면 간에 동일성 인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가령, 하나의 직육면체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선도면으로 작성할 경우, 아래 <그림 6>의 도면(1)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도면(2)와 (3)은 도면(1)에 단순히 와이어프레임만 추가된 것이며,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도면(4)는 도면(1)에 명암을 추가한 것이고, 도면(8)은 도면(4)에서 실선을 삭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면(5)와 (6)은 렌더링에 해당하나 선도면으로 표현하자면 그림(1) 내지 (3)과 같아진다. 도면(7)과 같이 각 측면에 완만한 굴곡이 있더라도 선도로 표현하면 도면(1)과 같아진다. 도면(7)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비록 그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물품으로 이해되지만, 디자인심사관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들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호 표현방식의 보정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출원서에 기본도면 내에서 선도와 다른 형식의 도면이 혼용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³⁰⁾. 이종 표현형식의 도면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관행 간에 불협화음을 탐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림6 동일 물품의 다양한 표현 방법>

3.4.5. 참고도면의 구분

지난 2019년 디자인의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던 ‘부가도면’을 기본도면에 통합한 이후, 디자인의 도면은 크게 ‘(기본)도면’과 ‘참고도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 비교적 짧은 10여 년 동안 ‘부가도면’³¹⁾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각 도면의 역할과 지위가 자주 변경되어, 오랜 기간 디자인 출원업무를 수행한 대리인도 참고도면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잦고, 심사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재 디자인의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단면도, 확대도(부분확대도 포함), 분해도’ 등은 기본도면으로 인정되고, 사용상태를 나타낸 도면은 여전히 참고도면으로 본다. 하지만, 분해사시도나 사용상태도는 그 구분이 쉽지 않고, 분해사시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공존하여 어떤 형식으로 도면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30) 현행 디자인출원의 도면의 형식에 관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서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도면의 보정시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역시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도면과 참고도면간에 다른 형식의 도면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기본도면 내에서 다른 형식의 도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불명확하다.

31) ‘부가도면’은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 디자인의 특정 부분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면으로, 2019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되어 부가도면 자체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표1 분해도면의 표현 방법에 따른 판단 경향>

도면 1	①분해사시도 →기본도면	②문자기재 →참고도면	③새로운 요소 →기본도면 or 참고도면	④움직임 표현 →참고도면	⑤부품 → 참고도면 /삭제	

가령, 일반적인 제도방법을 따르자면 ① 하나의 물품에서 분해된 부품들이 결합되는 축을 중심으로 나열되었을 때 분해사시도로 인정된다. ② 여기에 지시선을 표시하거나, 각부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행상 ‘지시선과 명칭’이 포함되었으므로 참고도면으로 분류된다. ③ 분해사시도에서 물품의 외관에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요소가 드러날 경우, 이를 기본도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심사결과가 공존한다. 분해과정에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복잡한 형태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④ 힌지와 같은 연결부를 중심으로 ‘열린’ 상태로 표현되거나, ⑤ 비정형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사용상태도로 판단되어 참고도면이 된다. 분해사시도는 몇 장까지 제출이 가능한지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시도가 아닌 측면도를 분해할 경우, 사시도(斜視圖: 물체의 3차원 형태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할 때, 특정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그림)가 아님에도 분해사시도로 불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비록 분해사시도로 판단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란에 ‘사용상태를 나타낸 도면’ 등으로 도면의 설명을 기재하는 경우, 참고도면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확대도’의 경우도, 물품의 부분을 확대한 부분확대도가 전체디자인과 함께 표시된 경우, 따로 표시된 경우, 각부 명칭이 기재된 경우, 어느 부분을 확대한 것인지 표시하는 지시선이 없는 경우, 개성적인 형태의 화살표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 출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절단면’의 경우도 통상의 기계 제도에서는 절단한 면의 뒤로 보이는 부분을 모두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심사기준에서는 ‘절단부 단면도’를 예시로 들고 있어³²⁾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편이다. 분해사시도와 확대도, 단면도 등은 일반적인 제도방법을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도면인지 참고도면인지 불명확하고,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심사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각 심사관은 심사관행을 따르거나, 혹은 협의/공동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상황이다.



<그림7 통상의 ‘단면도’와 ‘절단부 단면도’의 차이>

32)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25, 74면.

4. '전문가의 저주'와 열린 디자인심사

4.1. 전문가의 저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와 출원/심사관행이 불합치하는 경우, 오랜 경력이 있는 심사관은 디자인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경미한 불일치는 인정하는 반면, 경력이 짧은 심사관은 심사기준 등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거절이유를 지적하곤 한다. 또 각기 전공과 경력이 다른 지도심사관, 파트장, 소속 심사과와 심사과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관행이 생겨날 수 있다. 한편, 오랜 기간 한 가지 분류를 심사하다 보면³³⁾, 나름의 심사 기준 해석 방법을 체득하여, 타 분류와 다른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장기간 활성화된 탓에 오랜 기간 대면하지 못하는 심사관 사이에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관행이 불일치할 개연성도 있다. 심사관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디자인 도면]을 어느 정도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심사일관성이 떨어져 출원인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소지가 높아진다.

정해진 기준이 없고, 오래된 관행에 익숙한 심사관³⁴⁾은 '전문가의 저주(The curse of expertise, 1999)'³⁵⁾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의 저주'란 스탠퍼드 대학의 '힌즈(Pamela J. Hinds)'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작업성과를 예측하는 실험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은 오히려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는 일에도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중간정도의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이다. 산업계의 디자인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이에 맞게 디자인 출원경향도 변하고 있다. 특히청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해 디자인보호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한번 자리잡은 심사관행은 잘 변하지 않고, 장기간 한 가지 분류를 심사한 심사관은 자신의 심사경향(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관성이 생긴다. 가령, 군용장구 디자인은 경우, 과거 국방부나 군부대와, 군납업자간의 지재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수습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부등록요건³⁶⁾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밀리터리룩(Military look)'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어 군용장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품도 많아진 탓에 기계적으로 부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심사관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상황으로 바뀌었다. '얼룩(위장) 무늬'가 적용된 의류의 경우, 엄격한 심사관은 부등록요건을 적용하겠지만, 시장의 실시형태를 조사해 본 심사관이라면 시장의 변화를 인정하고 등록하기도 한다.³⁷⁾ 동일한 물품이 심사관에 따라 등록, 혹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책임심사관³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 발송과정에 결재를 받지 않아 부등록요건 판단에 대한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3) 각 디자인 물품은 특성이 다르고, 창작적 수준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디자인 심사관의 담당 심사분류를 잘 바꾸지 않는다.

34) 산업디자인심사팀의 경우, 총 17명의 심사관 정원 중 9명이 5년이상의 디자인 심사경력이 있고, 이중 10년 이상도 4명에 이른다(2025. 9월기준).

35) Pamela J. Hinds, "The curse of expertise: The effects of expertise and debiasing methods on prediction of novice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Vol.5 No.2(1999), pp. 205-221. <https://doi.org/10.1037/1076-898X.5.2.205>

36) 군복 및 군용장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배낭, 모포, 수통, 침낭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물품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군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다.(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25, 135면).

37) 이와 유사하게 얼룩무늬가 적용된 대상물품이 '명찰'인 경우, 부등록요건으로 거절되기도 하고, 등록되기도 하였다.

38) 7년 이상의 디자인심사경력과 일정 조건을 갖추면 책임심사관으로 지정된다.

디자인심사관은 단지 법 전문가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화하는 산업계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며, 넓은 심사재량권을 통제할 집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거나,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일부 예민한 사건을 공론화하여 심사관 단독의 판단을 줄이는 대신, 협의심사를 강화하여 심사 오류를 줄여야 한다. 또한, 심사파트별, 과별 심사처리결과를 논의하는 정례화된 ‘사전리뷰³⁹⁾’제도를 통하여 각 신·구 심사관간의 판단 차이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록 개별 심사관의 재량권이 줄어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은 있으나 심사관 개인의 판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다. 한편, 협의심사나 사전리뷰제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심사관간, 법 전문가 내부의 논의일 뿐이므로 큰 틀에서 소위 ‘전문가의 저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4.2. 열린 디자인심사

디자인출원 제도와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변리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양자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고, 변리업계 역시도 오랜 관행에 익숙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업계의 틀을 벗어나, 일반 디자인산업계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단지 세미나 등을 통해 디자인의 트렌드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심사판단에 대한 의견을 듣는 “열린 심사제도”⁴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판례상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유사판단, 용이창작’ 및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의 판단은 법지식에 매몰된 심사관이 기준은 아니라, 보통의 디자이너, 혹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방된 형태의 심사와 현업에 종사하는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 좀 더 현행화된 심사판단을 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디자인심사에 일반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형식과 실체적 판단’,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4.2.1. 디자인출원 형식의 개선

우선, 산업계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디자인출원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출원과 심사관행으로 굳어진 정투상도면의 형식이 실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형식인지, 혹은 단지 출원대리인과 심사관에게만 익숙한 형식인지 알 수 없고, 잊은 거절 이유를 만들어내는 투시도면, 와이어프레임 또는, 모양선과 같은 도면 내 표현방식, 과거 부가 도면으로 분류되던 분해사시도나 단면도 등과 참고도면의 구분기준 등은 심사관과 출원대리인 간에는 이미 오랜기간 조정이 이루어져 관행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당업자의 시선으로 점검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익숙한 형식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디자인권의 주체인 산업계의 의견은 반영되면 어떤 형식이 더 적합한 디자인도면인지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청취는 개선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2.2. 디자인심사의 실체적 판단

현재, 출원디자인의 ‘용이창작과 신규성(유사)판단, 부등록 요건’은 디자인심사관만 결정할

39) 협의심사의 일종으로 심사과 단위로 심사관이 모두 참석하여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2025년 7월 이후 도입되었다.

40) 디자인보호법 제59조 제2항에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은 2025년 7월 이후, 매월 다출원 민간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수 없는 폐쇄적인 심사절차이다. 출원인과 대리인은 심사진행과정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대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므로 객관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은 출원디자인의 심사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출원공개된 건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설정등록이 완료된 디자인권(비밀디자인 제외)에 대한 사후적 검토가 더 효과적이다. 비록 등록여부의 판단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디자인 심사과정에 검토된 선행디자인 자료와 심사과정에 검토되었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당 업계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면, 업계 현실과 심사관행간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판단 근거 및 심사관행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해 수만건씩 출원되는 디자인출원 모두를 대상으로 열린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등록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일반의 시선으로 재판단한 결과가 심사관의 판단과 상반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심사일관성이 흐트러지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고심이 더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일반인이 디자인 심사실무를 참관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열린심사제도 등을 정례화한다면, 애초 자율도면 도입과정에 기대했던 ‘출원 편의’라는 취지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간의 마찰은 예상되나 고착된 심사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순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마치며

디자인출원 및 심사의 관행은 오랜 기간 출원대리인과 심사관간에 교감을 통해 촉적된 암묵적인 약속들이며, 심사관 세대교체를 통하여 전수된 노하우이다. 또한 변화하는 디자인 출원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 규정과 심사기준의 공백을 메꾸는 비문헌적인 심사기준이기도 하다. 특히 도면작성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거의 없으므로, 심사관행은 출원인에게 예측가능한 심사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준개정이나,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폐지는 시장의 변화를 담지 못한 시행규칙과 기준을 심사관행에 맞게 변화시킨 예이며, 디자인 출원제도 개선의 좋은 근거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심사관행 그 자체는 명문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 내지 선임 심사관에게 OJT⁴¹⁾ 등을 통해 도제식으로 전수받아야 하고, 이러한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 출원인들에게는 디자인출원의 장벽이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디자인심사 판단을 모두 세세하게 규정하는 디자인심사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심사관은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내부적 합의를 해야 하며,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폐쇄적인 심사환경에서 근무하는 디자인심사관이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협의와 사전리뷰제 등 집단지성을 통하여 개인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심사관행이 정착되었다면 이를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하여, 각 심사관이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출원인이 전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산업계와 일반인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다출원국가와 제도를 일치시키는 제도적 개선은 지속해 왔으나, 디자인출원의 주체인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았다. 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의 제약이 엄격하므로 폐쇄적인 형태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나,

41) OJT: “On-the-Job Training”의 약자로, 직장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 훈련 방식. 특허청 신규심사관은 고경력의 심사관에게 OJT교육을 받는다.

산업계와 일반인이 제한적이나마 실체심사에 참여하는 열린심사 제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의 출원과 심사관의 심사 편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자를 제고할 수 있는 출원형식과 심사방향을 찾고, 심사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때 애초 자율도면이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 특허청,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특허청, 2025.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관련 법령집」, 특허청, 2025.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심사기준」, 특허청, 2025.
- 特許庁, 「意匠審査基準」, 特許庁, 2023.

학술지(국내 및 동양)

- 안원모, “등록디자인 도면에서의 파선의 해석: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2017).
- 진선태, “디자인 도면형식요건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2022).
- 진선태,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2015).

학술지(서양)

- Pamela J. Hinds, “The curse of expertise: The effects of expertise and debiasing methods on prediction of novice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Vol.5 No.2(1999).
<https://doi.org/10.1037/1076-898X.5.2.205>

판례

-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 특허법원 2020. 11. 13. 선고 2020허4662 판결.
- 특허법원 2022. 1. 20. 선고 2021허2687 판결.

신문기사

- 주상돈, 「‘부분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달라진다… ‘심사기준’ 개정」, 아이피데일리, 2025. 6. 14자.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9. 26.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 <<http://www.kipris.or.kr/>>, 검색일: 2025. 9. 26.
- 特許庁, “特許庁”, 特許庁, <<https://www.jpo.go.jp>>, 검색일: 2025. 9. 26.
- e-GOV 法令検索, “e-GOV 法令検索”, e-GOV, <<https://laws.e-gov.go.jp/law/>>, 검색일: 2025. 9. 26.
- J-PlatPat, “J-PlatPat”, J-PlatPat, <<https://www.j-platpat.inpit.go.jp/>>, 검색일: 2025. 9. 26.
- EUIPO, “Catalogue of the view and drawing requirements for designs”, ID5, 2018. 5. 16., <<https://id-five.org/catalogue-of-the-view-and-drawing-requirements-for-designs-2018/>>, 검색일: 2025. 9. 26.
- EUIPO/CNIPA, “Informative User Guide for the View and Drawing Requirements of Designs”, ID5, 2021. 11. 18, <<https://id-five.org/user-guide-for-the-view-and-drawing-requirements-of-designs/>>, 검색일: 2025. 9. 26.
- Industrial Design 5 Forum, “ID5”, ID5, <<https://id-five.org/>>, 검색일: 2025. 9. 26.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Design patent application guide”, USPTO, <<https://www.uspto.gov/patents/basic/apply/design-patent>>, 검색일: 2025. 9. 26.
- WIPO, “Guidance on Including Multiple Design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WIPO,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_system_guidance_multiple_d>

esigns.pdf>, 검색일: 2025. 9. 26.

WIPO, "Guide to the Hague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ttps://www.wipo.int/.../docs-en-hague-system-guide.pdf>>, 검색일: 2025. 9. 26.

WIPO. "Looking Good -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Desig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for Business Series Number 2, 2019.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pub-498-1-en-looking-good-an-introduction-to-industrial-designs-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pdf>>, 검색일: 2025. 9. 26.

WIPO. "The Reproductions of the Designs", WIPO,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guide/reproduction>>, 검색일: 2025. 9. 26.

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자인 도면 간소화 방안 연구", 특허청, 2006.